

선별진료소 아닌 자택귀가 조치... 풀어진 '방역 초심'

광주 중학생 3일 지나 검사... 여고생은 다음날 새벽 진료소 찾아 코로나19 느슨해진 초기 대처 지적... 교육당국 적극 대응 나서야

광주 중·고생 2명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사흘간 수차례에 걸쳐 오락가락하다가 최종적으로 14일 오후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광주 교육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음성 결정이 났지만 학생들이 의심 환자로 분류·검정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코로나19 초기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 지적이 일고 있다. 미약한 증상만 있어도 선별진료소로 학생들을 보내던 기준대응과는 달리 이번 학생들은 자택으로 귀가시켰기 때문이다.

초·중·고 전학년 등교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만큼 학생들의 이상 유무 체크와 진료 의뢰 등의 방역 최일선 업무는 밀착 생활자인 학교와 학부모가 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던 유덕중 A군과 대광여고 B양에 대해 원인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확진자로 분류됐던 입장을 반복했다가 사흘이 돼서야 음성 판정을 내렸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20일부터 단계별 개학을 진행함에 따라 의심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유증상자뿐만 아니라 미약한 증상만 있어도 학생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보냈던 것이다.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은 감염·확산

우려가 커 교육당국과 학부모가 방역의 최일선이라는 판단에 의해 학생 중에 코로나 의심 증상만 보여도 교육당국은 학부모에게 연락해 선별진료소로 보내거나 학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119를 통해서라도 선별진료소로 이동시켜 진단검사를 받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광주지역에서 2명의 학생이 코로나19 판단 오류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명의 학생 모두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선별진료소가 아닌 자택으로 귀가조치됐기 때문이다.

유덕중 A군은 중1년생으로 지난 8일 첫 등교를 했다가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이 있어 학교 보건실을 방문해 학부모와 함께 오후 2시께 조퇴해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A군은 기저질환으로 오후 2시께에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신가병원에서 진료 받고 자택에 돌아갔다가 3일이 지난 11일이 되어서 서광병원 선별진료소를 들러 진료를 받았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A군의 상태를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진료를 돌려줬다면 보다 빨리 대처하고, 혼선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대광여고 B양도 지난 10일 오후 1시께부터 미열과 두통이 있었지만, 오후 4시



광주 중·고생 2명에 대한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이 나온 가운데 14일 오전 광주시 남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학부모와 자녀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0분께 조퇴를 한 후 자택으로 귀가를 하고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서광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이후 2명은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4차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 판정이 반복되면서 혼선이 일었다. 많은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의 더 확실하고 강제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학교에서 학부모를 불러 선별진료소를 들러 진료 받기를 권유해도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학생들이 코로나 유증상이 있을 때 학부모들의 선별진료소 방문은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교육당국에서 선별진료소로 보내주면 검사를 진행하지만 학부모들이 오지 않는다면 대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9살 여아 지옥학대' 계부 영장 신청

경찰, 특수상해 혐의 추가

경찰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계부(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원경찰청 사안 이 중대하고 계부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14일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학대에 도구가 사용됐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9)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부를 창원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계부는 별다른 동요 없이 태연하게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에 앞서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다.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지난 4일 소환조사와는 달

리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러나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확인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부는 전남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실로 가기 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뒤늦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5일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친모는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연합뉴스

광주 2순환도로 뇌물 형제에 '재판부 "유리한 요소 하나도 없다"'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아 징역 3년6개월·2년 선고

"유리한 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서 A(55)씨 등 2명의 피고인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했다.

통상 재판부는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는데, 양형 과정에서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삼을 요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졌다.

A씨의 경우 변호사법,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업무상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광주 제 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약선 명목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억1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협상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공여기로 약속하고 공무원 동생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하는 가하면, 담당 공무원 퇴사 이후에는 16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받았다.

동생 B(50)씨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방조, 뇌물공여약속방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섰다.

B씨도 허위 용역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돈 3억4500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역 모 단체 사업본부장과 2014년 모 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B씨는 제2순환도로와 관련이 있는 특정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이들 반성의 진정성도 의심했다. 통상 '진지한 반성'은 양형 기준이 마련된 대부분의 범죄에서 감경 요소로

포함되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했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황도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생 B씨에 대해서도 범행 부인, 회피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담당공무원 동생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점 등으로 A씨의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A(55)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2051만 5455원을 선고했고 동생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멘토링비 유용 교사 해임 "재량권 넘은 지나친 징계"

광주시교육청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비로 자신의 자녀 사진첩을 만들고 도서를 구입하는데 쓴 초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지나친 징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전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희망교실과 학급운영비 명목으로 320여만원을 지급받아 2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A씨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며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기각된 뒤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교실운영비 240만원 중 179만원을 자녀 의료·잡화·도서 구입비 등으로 썼다. 희망교실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 문화체험, 생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A씨는 또 학급행사나 생활교육 등 자율적이고 특색있는 교육활동에 써야 할 학급활동비 88만원 중 24만원도 자녀 책을 구입하거나 사진첩 제작에 썼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 비례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라며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축협조합장 선거 때 돈 받은 조합원 25명 징역·벌금형

전남 축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조합원 25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공판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76)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C(63)씨 등 17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50만~8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모 축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로 지난해 3월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

MERITZ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AXA AXA 다이아몬드 AIG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AXA AXA 다이아몬드 BNP PARIBAS CARDIF The K손해보험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국건설서비스공제조합 K TMA 전국건설인력서비스공제조합